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36
----------	-------

발의연월일 : 2025. 11. 5.

발 의 자 : 김문수·민형배·주철현
이수진·김우영·전용기
이주희·정준호·박민규
진성준·허성무·이광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
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
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안정
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지방대학의 육성 사업과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

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선”을 “개선, 지방대학 육성”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인재양성”을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 육·연구, 운영 여건 <u>개선</u>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 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개선, 지방대학 육성</u> ----- ----- ----- ----- -----.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5조(세출)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u>인재양성</u>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 ---- <u>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u> ----- -----
5. (생 략) <u><신 설></u>	5. (현행과 같음)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 <u>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 · 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u>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u>2025년</u>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다.	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 <u>2030</u> 년----- -----.
---	---